

09 주문 집행 및 관리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68조(최선집행의무)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제4-37조(월간매매내역 등의 통지 등)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제6-31조2(순보유잔고의 공시)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제40조(정의)~제40조의 11(매도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45조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제81조(수탁의 내용), 동시행세칙 제108조 제82조(수탁의 방법), 동시행세칙 109조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제84조(수탁의 거부등) 제85조(주문정보의 이용금지등)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32조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코넥스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41조~제43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제71조(호가의 수량제한), 동시행세칙 제61조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77조 제81조의2(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동시행세칙 제78조의2~제78조의4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동시행세칙 제164조의4
기타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고객 주문기록 유지 관련 유의사항 통보(2008.9.10) 주문대리인 지정과 운영현황 점검 및 보고(2010.7.27) 공매도 잔고 공시 및 보고 매뉴얼(개인용/기관용)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제2편)

2. 주문의 수탁

□ 주문의 정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조⑤)

- ▶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

□ 주문수탁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2조(수탁의 방법)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1. 문서에 따른 방법
2.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 제1항의「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당일 장 종료 이후 매매거래내용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 및 제3항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정당한 매매주문자의 범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11. 다.)

1. 계좌 명의인
2.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한 경우 동 대리인
3.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4. 일임계약에 따른 일임매매관리자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용사례(△△증권)

1. 주문대리인 지정절차 및 관리
 - 주문대리인, 대리기간 및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함
 -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은 주문대리 위임장 이외 별도의 서면 위임장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문대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지정하여야 함
 - 당초 정한 주문대리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 전화·전화자동응답시스템(녹취), 전산

-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서면 등'이라 함)으로 계좌 명의인의 주문대리기간 연장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주문 대리인 지정이 자동 해지되도록 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반드시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자금출금 또는 이체 현황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함
2.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여부 확인 및 통지
-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동 주문대리인 지정을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 통지시 그 내용에 다수 고객 주문대리인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 주문대리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영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 *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자본시장법 §6, §17, §18, §445 등)
3.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문대리인 지정현황 관리·감독 등
- 주문대리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 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 지정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 및 관리 현황,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서의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본 기준에 따라 계좌명의인 또는 주문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통지받은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그 밖에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계좌의 명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월간매매내역 등' 및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의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사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받아서 보관·관리하여야 함
 - 영업점 내에 주문대리인의 개인책상, PC, 전화기 등을 제공하거나, 주문대리인이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투자자가 주문대리인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그 밖의 표시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됨
 -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TS 등을 통한 주문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계좌별로 별도의 log-on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 ※ 적용 제외 : 법인계좌의 주문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및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주문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 ※ 과거 '주문대리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금감원 공문(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용기준 안내, 금투업-00130, 10.10.27)에 따른 행정지도가 존재하였으나 2011.10.28 만료

▶ 수탁의 방법 (유가증권시장법무규정 제82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

1. 문서에 의한 주문 수탁시
 - 위탁자가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함
2. 전화등의 방법으로 주문 수탁시
 - 주문의 접수자는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 1) 주문의 접수자가 수탁의 내용을 수기로 주문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 2) 주문의 접수자가 회원시스템에 수탁의 내용을 입력하고 동 사항을 출력한 주문표(이하 “전산주문표”라 한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다만, 주문내용 등을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서명(전자서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전자통신방법으로 주문 수탁시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자와 미리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1) 회원이 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 2) 위탁자가 주문의 위탁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3)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내용이 수탁의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 4) 위탁자가 주문 및 체결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 5)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른 취소호가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 6) 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의 제출,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이체, 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7) 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 등 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주문내용등을 문서 또는 전산매체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 8) 회원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원이 위탁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4. 위탁자 주문에 의하여 매매거래 성립시
 -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의 매매거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전화등의 방법 및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함. 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당일 장 종료 이후 매매거래내용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음
 - 1) 종목명
 - 2) 체결수량 및 체결가격. 다만,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의 체결가격은 거래소로부터 장종료 후 통보받은 때 이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3)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 4)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문수탁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투자위험고지등)

규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 1. 특정종목의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나 이 조에서 “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대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제 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 최선집행의무

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나. 장내파생상품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2.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3. 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
-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①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 가. 서면 교부
 -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 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 나.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 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 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 등을 제공할 것
-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6. 투자자가 법 제174조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9.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거나 그 중개추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법 제55조 및 제71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
2.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를 강요하는 행위
3. 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제외한다.
 - 가.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 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 다. 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11. 투자자의 매매주문의 접수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일반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투자자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만,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당해 시장에 전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기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투자자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투자자의 서면 등에 의한 사전에 동의가 있을 것
 -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목에 따른 정당한 매매 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 (1)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 라. 단일계좌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매매주문자, 입출금(고)청구자, 매매거래통지의 수령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지 아니하는 행위
- 마.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라목에 따른 위임의사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계좌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계좌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바. 투자자가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진정한 매매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 (1) 당해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및 평균 거래량
 -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 (3) 당해 투자자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 (4)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 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법 제71조 및 법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 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행매매의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①,⑤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①제4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5조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금지행위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수탁한 주문을 체결시키기 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금지행위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정보 제공관련 비조치의견서(2011.2.22)>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종목명 및 매매방향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아님

① 정보제공의 목적

-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대량매매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으로 간주
 - 대량매매 의사를 표시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
 - 당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WAP) 또는 최선의 주문집행(Best Execution, Careful Discretion)으로 체결을 요구하는 주문을 수탁한 경우
 - 일정한 가격범위 또는 특정가격(종가 또는 시가 포함)을 지정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

② 정보제공의 기준

-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회사와 거래관계, 수익 기여도, 신용도, 운용규모 등의 회사별 내부선정 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사 고객리스트 상의 고객
 - 과거 3개월 동안 회사와 해당 종목을 거래한 고객
 - 해당 종목에 대한 미디어기업체(블룸버그 등) 지분공시 정보상에 있는 투자자
 - 사전에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다고 회사에 통보한 고객

-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인서 등을 주문정보 수령 전에 회사에 제출한 고객

<참고> 비조치의견서 '금융투자회사의 제3자 주문정보 제공시 수량정보 제공이 가능한지(2016.8.19)'

- 제3자에 주문정보 제공 시, '종목명', '매매방향'과 함께 '수량정보'를 동시 제공불가
- 최초에는 종목명 및 해당종목의 매수/매도 방향을 제공한 후, 상대방의 대량매매거래 의사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종목의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자기매매를 위한 매매권유행위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제5호)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 주문수탁 거부사유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투자자가 법 제174조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4조(수탁의 거부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72조내부자 단기매매차익반환, 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종) 및 제178조(부정거래 행위)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제1호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회원은 제17조, 제18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모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⑤ 회원은 제8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주식워런트증권 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 불공정거래 등의 예방
- 불공정거래의 유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법 제174조)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시세조종행위 (법 제176조)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
부정거래행위 (법 제178조)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법 제178조의2)	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등의 매매 관련 정보이용 교란행위, 시세관여 교란행위
기타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신고 공시의무 위반 거래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 회사 및 임직원은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서 열거(아래 표 참조)한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자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도 아니된다.

1. 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2.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 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3.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4.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5.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평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6.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7. 장 종료 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8. 당일 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9.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10. 특정 종목의 시세 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
11.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2.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종목에서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13.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종목의 거래상황에 관하여 타인을 유인하기 위하여 다른 종목을 거래하여 그 가격을 변동시키거나 그 다른 종목에 관한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
14.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해 종목과 다른 종목간의 가격 차이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15. 특정 증권의 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한 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을 거래하거나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당해 미결제약정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증권의 종목을 매도 또는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
16.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선물거래의 결제,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최종거래일 이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의 종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7.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의 배정을 유리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증거금(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포함한다)이 유리하게 산출되도록 하는 행위
19.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미결제약정을 대량으로 보유한 후 당해 미결제약정에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의 종목에 대하여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의 가격 또는 최우선후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0. 증권의 종목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21.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3. 주문처리 및 통지

□ 주문처리 기본원칙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3조(주문의 처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기본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기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 주문처리방법(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객의 매매주문을 접수순에 따라 회원시스템의 주문단말기에 신속·정확하게 입력 ② 일부 영업소의 주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주문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처리 ③ 회원이 주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처리 </div>
------	---

□ 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제40조의 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 매매 주문시스템의 관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내지점등이 자사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금융투자업재(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와 국내지점등 사이
2.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지점등과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 사이

▶ 시세정보 등의 차별적 제공 금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5(차별적 제공 금지) ①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2.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3.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4. 회사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 ③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닐 것
 2.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3.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4.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 계약설정 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할 것
 5.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 ②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 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 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 안내 예시(△△증권 사례)			
※ 거래소 회원이 주문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유기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의2 제2항,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2 제2항,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제2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0조의3 제2항)			
<일반 매매 서비스>			
서비스명	공표항목	세부 구성요소 설명	
일반매매 서비스	주문접수 서비스	대상상품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
		생성주체	컴퓨터, 고객
		생성위치	인터넷환경
	시세 서비스	입력매체	당사가 제공하는 일반 Trading 매체 (HTS, WTS, 모바일매체, ARS 등)
		전달매체	인터넷, 전화망
		접수매체	회원 시스템
	시세형식	일반시세	

서비스명	공표항목	세부 구성요소 설명
호가점검 서비스	호가의적합성 점검방법 및 지리적 위치	상품처리서버(일반원장,서울 상암동 전산 센터)
호가제출 서비스	프로세스 유형	공용프로세스
이용조건	회원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요건, 투자자요건	당사 계좌를 보유한 모든 고객
비용	부과대상/방법	홈페이지에 공지된 수수료 외 별도의 이용료 없음

<파생 알고리즘 매매 서비스>

서비스명	공표항목	세부 구성요소 설명
주문접수 서비스	대상상품	KOSPI200지수선물옵션, ELW(CME 야간선물 및 유렉스 및 기타 파생상품은 적용대상이 아님)
	생성주체	컴퓨터
	생성위치	지점트레이딩룸, 여의도전산실(고객존), 인터넷환경
	입력매체	고객의 자동주문시스템(API기반의 고객제작)
	전달매체	VPN, 인터넷, 전용선
	접수매체	회원 시스템
시세 서비스	시세형식	일반시세, 거래소시세
호가점검 서비스	호가의적합성 점검방법 및 지리적 위치	파생상품전용서버(미니원장, 서울 여의도, 부산)
호가제출 서비스	프로세스 유형	공용프로세스
이용조건	회원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요건, 투자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I를 기반으로 고객용 매매주문시스템을 개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고객에 한함(OpenAPI참고) - 거래규모 요건 ·VPN 이용시 : 1백만원/월의 순수수수료 충족 조건필요 ·전용선(LAN) 이용시 : 1백만원/월의 순수수수료 충족조건필요 ·고객존 이용시 : 2백만원/월의 순수수수료 충족 조건필요 ·고객존(부산)이용시 : 5백만원/월의 순수수수료 충족조건필요
비용	부과대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협의 수수료 가능) - 관련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부담 비용(개발비 및 장비구입 등)발생할 수 있음

〈법인 및 적격투자기관 매매서비스〉			
서비스명	공표항목	세부 구성요소 설명	
파생 알고리즘 매매 서비스	주문접수 서비스	대상상품	주식, E/W, 선물, 옵션
		생성주체	컴퓨터, 고객
		생성위치	여의도전산실(고객존), 인터넷환경
		입력매체	고객의 주문시스템
		전달매체	인터넷, VPN, 전용선
		접수매체	회원 시스템
		시세 서비스	시세형식
	호가점검 서비스	호가의적합성 점검방법 및 지리적 위치	상품처리서버(일반원장, 서울 상암동) 파생상품전용서버(미니원장, 서울 여의도, 부산)
	호가제출 서비스	프로세스 유형	공용프로세스
	이용조건	회원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요건, 투자자요건	적격투자기관 중 당사가 제안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 개발 능력을 갖춘 고객 및 고객별 당사가 정한 월단위 최소 수수료 금액충족 고객
비용	부과대상/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협의수수료 가능) - 관련서비스 구축으로 고객부담 비용(개발비 및 장비구입 등) 발생할 수 있음	

▶ 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 의무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 의무)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과 관련한 전산, 통신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 하여야 한다.

▶ 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①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처리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 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매도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투자자의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고객이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미납입한 경우 처리방법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매매주문 수탁 거절사유 및 고객자산 인출 제한 거절사유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매도

▶ 공매도의 제한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차입공매도의 처리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②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1.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위탁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매도주문이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위탁자가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확인할 것)
□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 (결제 불이행 염려가 있는 경우 매도 주문 위탁을 받지 않거나 증권시장에 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
2.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③ 회원은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받을 것
2. 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 가. 문서에 의한 방법
 - 나. 전화전보·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
 - 다.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 통보받은 내용은 세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 유지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가 해당 계좌에서 공매도를 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제3항의 방법으로 제2항 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⑥ 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가하락을 및 차입 공매도 비중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2. 법 시행령 제20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한 종목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차입공매도 확인방법) ① 규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 등을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와 함께 3년 이상으로서 회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 차입공매도 미실행 확인서는 첨부 양식을 참조할 것

-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취급 유의사항(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발췌)

제9조(주문의 수탁) ①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확인은 개별 매도주문 별로 하거나 향후 제출될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대여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가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고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확인일자
2.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결제 증권을 대여해 주는 대여자 명단
3.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된 결제이행 방안

② 회사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수탁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에 한하여 DMA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한국거래소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도증권의 사전 납부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은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통보받은 기간 동안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제10조(준법확인서 징구) ①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매도 관련 규정 및 그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준법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준법확인서에는 이 규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 규준의 내용 및 그 변경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탁의 거부) 회사는 위탁자가 제9조제1항에 의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제10조의 준법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탁자로부터의 차입공매도 주문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 모니터링) ①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 관련 법규 및 이 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회사가 수탁한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업무처리 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주기적 혹은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32조제2항에 의하여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위탁자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결제증권 확보 여부, 포지션에 따른 일반매도 및 공매도 구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가 적절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위규 가능성이 없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기 샘플 점검 등을 통하여 시스템 오류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삭제>

③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 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④ 영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 순보유잔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매매체결일
2.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다만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당시 계약조건에 비추어 결제의 이행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 이전 제2영업일

4.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한 날
 5. 증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
 6.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확정된 날, 원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
 7.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⑤ 매도자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 ② 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 제도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자본시장 보고>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 이용안내 중)

구분	공매도 잔고 보고	공매도 잔고 공시
근거조항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
의무자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자 * ETF(법인형 ETF는 공시 및 보고대상), ELW, DR 등은 제외하며 우선주와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은 포함	
의무 발생기준	(1) 공매도 잔고비율*이 0.01%이상 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2) 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비율 0.5% 이상

구분	공매도 잔고 보고	공매도 잔고 공시
	* 공매도 잔고비율(%) = (공매도 잔고 / 상장 주식수) X 100 (3) 보고기준 판단시점 : 매 영업일 24시 기준	
기한 및 주기	(1) 의무 발생기준에 도달한 날(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2)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 의무 발생	
내용	주식명,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등	주식명, 인적사항 등
방법	(1)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자 등록을 하고 잔고내역 등 입력 -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를 발급받고, (최초 1회) - 보고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 하여 보고 혹은 공시에 필요한 자료입력(화면양식 또는 엑셀파일) (2) 공시제도와 보고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의무발생 시, 각각 이행하는 것이 원칙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2조(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 등의 미결제약정수량 환산 방법 등) 및 제162조의2(주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 파생상품 거래시 다음의 수량(회원이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제외)을 초과하여 미결제약정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거나 동일인 위탁자가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상품거래	(1)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단, 결제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 계약 (2)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단, 결제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 계약
위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상품거래' 이외의 주식상품거래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각 기초자산별로 아래와 같음 1. 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옵션거래 - 각 기초자산별로 2만계약. 단,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코스닥150선물거래 또는 코스닥150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는 ETF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10만계약 2. KRX300선물거래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 2만계약. 단,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

위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상품거래' 이외의 주식상품거래	3. 섹터지수선물거래 - 1만계약 단,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4. 해외지수선물거래 - 5만계약 단,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2만5천계약 5.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 - 동일한 기초주권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 수량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1천 계약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공표하는 수량 $\text{Min}\{3\text{십만}, \text{Max}\{5\text{천}, \text{기초주권의 보통주식 총수} \times 1\text{천분의 } 5 \div \text{Max}\{\text{동일한 기초주권 종목의 거래승수}\}\}$ 6. ETF선물거래 - 각 기초자산별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수량
금선물거래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돈육선물거래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및 최근 월 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두 번째 목요일부터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9백계약
그 밖의 거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때마다 정하는 순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총미결제약정수량*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중 큰 수량에서 적은 수량을 차감한 수량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을 더한 수량

<참고사항>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중 발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는 경제상황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급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의 수량을 축소할 수 있다. - 주식상품거래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른 회원 또는 위탁자의 보유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은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또는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서 제외한다.(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 회원은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거래에 대하여는 위탁자로부터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보관하고 이를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 및 회원은 증빙 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를 위반하는 회원에게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 및 별표2) - 기본부과금 : 10만원 / 추가부과금 :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초과 1계약당 1만원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호가수량제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1조(호가의 수량제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61조(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 제17조의2>)

1. 호가수량한도

구 분		호가수량한도
선물 거래	코스닥150선물거래, 섹터지수선물거래, 해외지수선물거래,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10년국채선물거래, 미국달러선물거래(글로벌거래), 금선물거래, 돈육선물거래	1,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코스피200선물거래(정규거래), KRX300선물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ETF선물거래	2,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200계약
	미국달러선물거래(정규거래),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	5,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10,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0계약
	주식선물거래	1,000계약, 2,000계약, 10,000계약 중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량.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의 10분의1로 한다.
	코스피200선물거래(글로벌거래)	100계약
선물 스프레드 거래	코스닥150선물스프레드거래,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3년국채선물·10년국채선물 상품간스프레드거래	1,000계약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KRX300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ETF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금선물스프레드거래,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	2,000계약
	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5,000계약
	미니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미국달러선물스프레드거래, 엔선물스프레드거래, 유로선물스프레드거래, 위안선물스프레드거래	10,000계약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1,000계약, 2,000계약, 10,000계약 중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량
옵션 거래	코스닥150옵션거래	1,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코스피200옵션거래	2,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200계약
	통화옵션거래	5,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구 분		호가수량한도
옵션 거래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10,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0계약
	주식옵션거래	1,000계약, 2,000계약, 10,000계약 중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량.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의 10분의1로 한다.

2. 누적호가수량한도 및 계산방법

가. 누적호가수량한도

구 분			누적호가 수량한도
자기계좌, 사후위탁 증거금 계좌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 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코스피200옵션거래	알고리즘 거래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15,000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30,000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 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알고리즘 거래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상승·하락 방향별 150,000

나. 누적호가수량한도 산출방법

구분	내 용
상승 방향	$\sum(\text{선물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text{선물거래의 매수 기체출호가수량}) +$ $\sum(\text{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 + \text{선물스프레드거래의 기체출호가수량}) +$ $\sum(\text{콜옵션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text{콜옵션거래의 매수 기체출호가수량}) \times \text{델타} \times \text{승수비율} +$ $\sum(\text{풋옵션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text{풋옵션거래의 매도 기체출호가수량}) \times \text{델타} \times \text{승수비율}$
하락 방향	$\sum(\text{선물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text{선물거래의 매도 기체출호가수량}) +$ $\sum(\text{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 + \text{선물스프레드거래의 기체출호가수량}) +$ $\sum(\text{콜옵션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text{콜옵션거래의 매도 기체출호가수량}) \times \text{델타} \times \text{승수비율} +$ $\sum(\text{풋옵션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text{풋옵션거래의 매수 기체출호가수량}) \times \text{델타} \times \text{승수비율}$

비고 1. '호가수량'은 거래소에 제출하려는 호가수량

2. '기체출호가수량'은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미체결 호가수량

3. '델타'는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일 장종료 시점의 델타

4. '승수비율' = 옵션거래의 거래승수 / 선물거래의 거래승수

□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4조의4(알고리즘거래계좌의 관리)

- ▶ 회원의 알고리즘 거래계좌에 대한 신고 및 거래소의 계좌단위 호가처리 기능 제공
 - 알고리즘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착오거래, 과다호가 등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거래를 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신고방법 : 회원이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
 - 회원은 알고리즘 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 * 알고리즘 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알고리즘)에 따라 투자 판단, 주문·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함
 - 알고리즘 오류, 시스템 장애 등의 발생 시 회원의 신청으로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협의대량거래 신청은 제외)하는 “계좌단위 호가처리”기능 도입
 - 알고리즘거래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파생상품계좌(시장조성계좌는 제외)를 통하여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만건 이상의 호가건수(글로벌거래와 협의거래는 제외)를 제출한 회원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 경우 해당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거래일 장종료시까지 해당 파생상품계좌가 알고리즘 거래를 행하는 계좌가 아님을 밝히는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주문착오 방지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편

- ▶ 상품별 적용기준 : 주문보류 및 경고기준의 분류
 - 금융투자회사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가격미지정 주식 매도주문의 주문금액 산정시 상한가 적용 등
 - 예) 금리선물 경고기준 20틱 초과~40틱 이하, 보류기준 40틱 초과 주문
 - 금융투자회사는 천재지변, 전사·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의 적용을 임시 정지할 수 있음

<상품별 경고·보류기준>

구분 ⁶⁾	주문금액		주문수량		주문가격 ¹⁾	
	경고기준	보류기준	경고기준	보류기준	경고기준	보류기준
주식 ²⁾ ,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개인)		<삭제>	<삭제>	-	-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					
	2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	60억원 초과				
KOSDAQ150선물 ⁴⁾ ,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	-	300계약 초과 500계약 이하	500계약 초과	50틱 초과 100틱 이하	100틱 초과
KOSPI200선물 ⁴⁾ KRX300선물 ⁴⁾	-	-	600계약 초과 1,000계약 이하	1,000계약 초과	50틱 초과 100틱 이하	100틱 초과
미니KOSPI200 선물 ⁴⁾	-	-	3,000계약 초과 5,000계약 이하	5,000계약 초과	125틱 초과 250틱 이하	250틱 초과
유로스톡스50 선물 ⁴⁾	-	-	600계약 초과 1,000계약 이하	1,000계약 초과	50틱 초과 100틱 이하	100틱 초과
변동성지수선물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40억원 초과	-	-	-	-
KOSPI200옵션 미니KOSPI200 옵션 KOSPI200위클리 옵션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	-	-
KOSDAQ150옵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	-	-
ELW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	-	-
금리선물 (3·5·10년 국채선물)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100틱 초과
통화선물 (달러·엔·유로 ·위안선물 및 달러플렉스)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200틱 초과
통화옵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	-	-
상품선물 (금)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100틱 초과

구분 ⁶⁾	주문금액		주문수량		주문가격 ¹⁾	
	경고기준	보류기준	경고기준	보류기준	경고기준	보류기준
상품선물 (돈육)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200틱 초과
주식선물 ETF선물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	-	-
주식옵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	-	-
선물 스프레드 거래 ⁵⁾	미니 KOSPI200 선물 스프레드	-	-	-	125틱 초과 250틱 이하	250틱 초과
	유로스톡스 50선물 스프레드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100틱 초과
	섹터지수 선물스프레드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100틱 초과
	변동성지수 선물스프레드	-	-	-	15틱 초과 30틱 이하	30틱 초과
	그 외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100틱 초과

- 1) 직전약정가격(당일 정규거래시간의 결재월 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되, 실시간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배제 가능
- 2) KOSPI200선물, KRX300선물, KOSDAQ15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미니KOSPI2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은 주문수량 또는 주문가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 3) 거래 개시시 전일 종가기준
- 4)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보류기준 적용

▶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

1.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주문입력자와 관계없이 모든 주문에 일괄적용)
 -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스스로 재확인
2.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주문입력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인 경우)
 -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본인이 아닌 책임자 등 다른 직원이 재확인(단,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 생성)
3. 직접주문접속(Direct Market Access : DMA) 거래 또는 시스템매매 등을 통해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1. 또는 2.의 기준
 - 경고기준 또는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 해당 주문을 보류 또는 거부하고 이에 대한 의사를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

적용 제외 예시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내용대로 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주문

- 가. 대량매매 관련 주문
- 나. 바스켓매매 관련 주문

주문의 특성에 따라 경고 및 보류기준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주문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 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매매주문
- 나. 취소주문
- 다. 단주문

▶ 기타 주문착오방지 시스템

1. 자기매매 주문가능한도 설정

- 리스크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일별 손실한도 또는 일별 주문한도를 설정·운영
- 회사는 전항의 주문가능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자기매매 주문을 하지 아니함(다만, 주문가능한도 초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 제외)
- 주문가능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품별, 부서별 등으로 주문가능한도를 배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시스템매매 등에 대한 내부통제

- 회사는 자기매매 관련 시스템매매 소프트웨어 또는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 부서 및 이와 독립된 부서(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및 전산 부서 등)가 공동으로 해당 전산시스템 구성·운영 요건 등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
- 이 경우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점검 및 기 도입된 전산시스템 변경관련 기준과 절차를 포함

3. 개별적 주문착오방지

- 금융투자회사가 제정·운영하는 경고 및 보류기준과 별도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대한 대고객 고지

4. 중복주문 방지

- 이미 전송된 주문이 다시 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송된 주문내역이 자동 삭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5. 시장가주문 착오방지

- 시장가주문에 대한 별도의 입력방법 마련

6. 주문화면 개선

- 매수/매도 주문별 화면의 색상 및 형태의 차별화

예) □ 매수화면 : 붉은색 + 타원형

□매도화면 : 푸른색 + 사각형

- 단가의 구분 표시

□주문입력창 : 가격과 수량을 바꿔 입력하는 주문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가입력란에 “원”을 표시하고, 단가입력란과 수량입력란의 외관상 구별이 가능하도록 색상 등을 차별화

□주문확인창 : 주문입력창 외에 주문확인창에서도 정상입력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단가 부분은 색상, 굵기, 크기를 차별화하여 표시

7. 우리사주조합원 배당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내역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식배당 화면과 현금배당 화면을 분리·운영하여야 하며, 현금배당 업무는 고객의 주식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담당
- 우리사주조합에 배당된 배당금 또는 주식을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입고)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금 또는 배정주식 수량과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입고)된 배당금 또는 배정주식 수량의 일치 여부에 대해 준법감시부서의 사전 확인
- 우리사주조합에 배당된 배당금을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금융결제원 전산망 또는 은행 연계망을 이용

8. 주식 입·출고

- 고객으로부터 현물 주식의 입고를 위탁받은 경우 사고증권 여부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입고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됨
- 고객이 회사가 정한 금액 또는 수량(예시 : 전일 종가 기준으로 5억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입·출고하는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부서 사전 확인
- 주식 입·출고 시스템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보관

9. 매매가능수량 산정

- 주식시장 개장 전에 고객 계좌별로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
-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매매주문 수탁을 거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동의를 득하여 미체결 주문을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 프로그램 오류 또는 고객의 착오에 의한 주문
 -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주문

10. 주문전송 차단

- 다음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매매 주문은 거래소로 전송되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수량

□코스닥시장 상장주권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109제 항에서 정하는 수량

□코넥스시장 상장주권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119제 항에서 정하는 수량

11. 대체 입·출고 처리

- 다음의 업무가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 고객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의 회사 간 대체 입·출고

□ 발행회사의 유무상 증자 감자 배당 합병 액면분할 병합 등에 따른 주식배정(변동) 내용의 수신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 고객이 발행회사를 통해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제3자배정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수량 등의 수신

12. 시스템 점검

- 주식매매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 상시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주문 전달 후 모니터링

- 거래소로 착오주문이 전달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 호가취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착오주문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보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절차 마련

2. 정기 자체감사 실시

-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미비점 발견 시 관련 규정 및 시스템 보완

3. 임직원 교육 및 투자자 안내

-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문착오 방지의 중요성, 관련기준,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투자자에게는 대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경고 및 보류기준의 세부내용을 안내

4. 기록·유지

-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발생 시 승인자 성명 등 처리내역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유지(전산매체 등으로 보관 가능)

5. 착오주문매매내역 보고

- 착오주문매매 발생 시 담당자는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손실예상금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내부통제 담당부서에 통보

- 착오주문매매로 유가증권 등의 매매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동 영향이 일정 기간 지속되어 투자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보고

- 착오주문매매 발생부서는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 손실내역 등이 기재된 착오매매 보고서를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6. 특별점검 실시

- 회사의 상근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부서는 착오주문매매 금액 또는 손실금액, 착오매매 원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생원인 및 사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

□ 착오거래 구제제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1조의2(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2(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요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3(착오거래의 구제신청)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4(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착오거래 구제요건 등

<파생상품시장>

구 분	내 용	비 고
대상 상품	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거래, 옵션거래	
대상 거래	회원,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 요건	① (약정가격×착오거래구제기준가격)×약정수량×거래승수≥100억원 ※ 선물스프레드 시장의 경우 : 기초자산 및 거래승수가 동일한 선물시장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 ②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를 벗어날 것 ③ 착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④ 착오자가 '대량투자자착오거래'구제제도를 악용하지 않을 것 ⑤ 그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해 구제 필요가 있을 것	* 세칙 별표제24호 참고
구제 신청 절차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해당 착오거래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신청서'로 신청 - 다만, 협의거래와 글로벌거래의 경우에는 착오거래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음 ① 해당 착오거래 발생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신청 ② 구제를 신청한 회원은 지체없이 거래소에 소명자료 제출 ③ 거래소는 신청서의 내용 누락, 소명자료 불충분 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세칙 별지서식 제15호 참고
구제 방법	- 거래소는 구제신청내용 및 소명자료를 검토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착오거래를 구제할 수 있음 ① 신청받은 날의 장종료 후 30분까지 구제 여부 결정 통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거래일의 장 종료 후 30분까지 구제 여부 확정 가능) ② 거래소 VS 결제회원, 지정결제회원 VS 매매전문회원 간 결제 시	* 회원은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를 초래한 위탁자 및 그 거래의 상대방인 위탁자에 관하여 ② 및 ③의 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p>대량투자자착오거래 약정가격을 다음가격으로 의제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격변경 가능)</p> <p>1)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 보다 높은 경우 : 착오거래구제상단 가격(별표 24의 구제제한범위 이내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p> <p>2)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 보다 낮은 경우 : 착오거래구제하단 가격(별표 24의 구제제한범위 이내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p> <p>③ 구제여부가 ①의 시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결제(구제신청 결제회원이 동시에 상대방 결제회원인 경우 상대방 결제회원으로 봄)</p> <p>1) 구제 신청 결제회원 : 약정가격</p> <p>2) 상대방 결제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 보다 높은 매도 : 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 - 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 보다 낮은 매수 : 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 - 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 보다 높은 매도 : 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 - 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 보다 낮은 매수 : 약정가격 <p>- 거래소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p>	<p>으로 위탁자 결제 금액 및 위탁증거 금액 산출</p>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구 분	내 용	비 고
대상증권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	
대상거래	회원,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 착오매매 정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착오매매의 정정범위)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착오매매처리약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착오매매처리약정)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착오매매의 정정)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착오매매처리약정)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착오거래의 정정방법)

▶ 거래소 착오매매

- 정정범위 :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 또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장애로 인하거나 매매계약 체결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체결내용이 호가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
-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이하 '유가증권 시장 등'이라 함)의 정정방법 :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외의 경우 회원에게 상품으로 인수시킨 후 정정. 이 경우 거래소 착오매매분을 회원의 상품으로 처리하기 위해 착오매매처리약정을 체결
- 파생상품시장의 정정방법 :
 - 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호가의 종류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 등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함
 -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그 구분에 부합되도록 정정

▶ 회원 착오매매

- 정정범위 : 거래소시스템에 접수된 호가로서 회원이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 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문내용에 맞지 아니한 매매계약
- 유가증권 시장 등의 정정방법(다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규모착오매매는 적용하지 아니함)
 -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도·매수 등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분을 당해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하여 거래소에서 지정한 서식 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전자전달매체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정정
 - 회원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그 구분에 맞도록 정정
 - 착오가 발생한 때부터 그다음 매매거래일 장종료 시 코넥스시장의 경우 15시 3분 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요건 및 구제신청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함
- 파생상품 시장의 정정방법(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호가의 종류 등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함
 -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하거나 착오거래가 성립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파생상품계좌번호를 정정
 - 위탁거래와 자기거래의 구분, 최종투자자 구분코드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 그 구분에 부합되도록 정정. 다만, 최종투자자 구분코드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수량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에 대한 동시착오거래의 경우: 주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수량은 착오거래가 성립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파생상품계좌번호를 정정하고 그 외의 수량은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함
- 위에 따른회원착오거래의 정정은 착오거래가 발생한 날의 장종료 후 3분 이내에 회원이 착오거래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
 - ※ 대량투자자착오거래(최종거래일 도래종목에 대해 발생시 제외)가 회원착오거래(위탁거래외 자기거래의 구분 및 투자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거래 제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후 회원착오거래를 정정

착오매매 처리방법 적용사례(△△증권)				
① 임직원의 착오로 고객의 주문이 실제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구분	금액별		처리절차	비고
상품 정정	회사 손실금액	1천만원 미만	부서장 결재 (결제업무부서, 준법감시부서 합의)	담당직원 경위서 (부서장 확인) 및 증빙서류 첨부
		1천만원 이상	본부장 결재 (결제업무부서, 준법감시부서 합의)	
계좌 정정	정정 거래금액	10억원 미만	부서장 결재 (결제업무부서 합의)	
		10억원 이상	부서장 결재 (결제업무부서, 준법감시부서 합의)	
※ 상품정정으로 보유하게 된 포지션은 발생 당일 중으로 정리하여야 함(장 종료 직전에 착오매매가 발생하여 당일 정리가 어려운 경우 야간시장 거래를 포함 익영업일 장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정리하여야 함)				
※ 외국인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 계좌 또는 증권사의 외국인 거래전용 통합계좌의 거래로서, 매매수량 분배를 위한 계좌정정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결제업무부서에 협조요청 문서를 송부하여 처리				
② 고객이 주문착오로 인하여 계좌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해당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계좌정정에 관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결제업무 부서 및 준법감시부서의 합의를 받아 본부장 결재로 기안 품의				

□ 매매체결의 통보

- 자본시장법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

▶ 매매내역 통지시점

통지시점	통지할 내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제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 매매성립 내역 통지방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매매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	고객이 통지를 원치 않는 경우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4. 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고객이 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5.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1.~3. 방법으로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 불가)	영업점에 비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면 통지한 것으로 봄

▶ 월간매매내역 통지

통지시점	통지할 내용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는 다음 달 20일까지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 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는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반기말 잔액·잔량현황
통지에 같음	1. 통지한 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반기말 잔액·잔량 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8조제5항)

4. 검사 사례

□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로 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은 2011.6.1~2012.10.30 기간 중 ◆◆◆(주) ▷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 △△△)*로부터 ▲▲▲▲ 1종 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총 506회(주문금액 1,065억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 (주)▷ 비서실 직원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조치내용	기관주의, 기관에 대한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로 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 000지점 부장 ○○○는 2010.9.14~2011.7.21 기간 중 □□□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주)○○○○ 주식 등 13개 종목, 총 179회(주문금액 14.4억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조치내용	기관에 대한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2011.4.22 장 개시전 ◆◆◆팀이 □□□로부터 ○○○(주) 주식 175,317주 (당일 거래량 1,486,188주의 11.8%)에 대한 매도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일 09:24~10:58 시간 중 “□□□가 ○○○(주) 주식 17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는 주문정보를 ○○○투자자문(주) 등 9개 기관투자자에게 유선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
조치내용	기관주의, 기관에 대한 과태료 117.5백만원 부과

□ 공매도 주문수탁 절차 위반

지적내용	관련법규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일반매도(Long Sell), 공매도(Short Sell) 여부가 불명확한 매도주문을 수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국내 C증권사는 B운용사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면서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매도 주문으로 수탁·처리하여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관련법령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
조치내용	과태료 900만원

□ 무차입공매도

지적내용	△△증권은 장종료 후 시간외바스켓 매매 시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총 27종목, 67,011주의 무차입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여 체결시킴 - 무차입공매도가 규정위반임을 알고도 주문제출 실수로 인한 위탁자의 매수주문 미체결분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매매계좌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실행 - 감독자 승인 없이도 트레이더 임의로 매매가 실행되고, 매도주문 시 주식보유 여부도 체크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비하여 결제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
관련법령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
조치내용	한국거래소 회원제재금 14백만원

□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과장 ◇◇은 2009.2.17~2009.5.18 기간 중 △△명의계좌에서 (주)▲▲ 주식 등 2개 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총 526회, 거래금액 61억 51백만원)을 수탁하면서 동 주문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조치내용	과태료 5천만원

5. FAQ

Q1 주문증빙자료의 의미와 그 보관방법은 어떠합니까?

- ☞ 주문의 수탁방법에는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등에 의한 방법 그리고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문표, 유선 녹취기록, 이메일, 메신저, FAX등이 주문증빙자료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의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그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10년간 보관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법상 영업상 중요서류의 보관과도 같은 취지이며, 주문증빙자료의 누락은 제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고객과의 매매 관련 분쟁발생시 주문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받는 경우의 주문증빙방법 및 주의사항은 어떠합니까?

- ☞ 주문증빙은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바, 실무상 영업점 직원단말기의 사내·사외 메신저 및 이메일(회사메일을 사용하도록 권고)을 모두 전산시스템에 백업함과 동시에 장래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 보관을 목적으로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 수탁시에는 영업직원이 건별로 주문표를 작성하고 주문표 뒷면에 관련이메일 및 메신저 내용을 출력한 출력물과 팩스문서를 첨부하여 편철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은어, 약어 등을 사용하지 말고 주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문수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3 선물 옵션계좌는 주문내역이 다수 발생되는데, 건별로 주문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까?

- ☞ 선물 옵션계좌의 주문내용증빙은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건별로 주문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주문내역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주문체결내역 명세, 잔고확인서 및 전산 주문표에 고객의 확인을 받는 것은 주문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고객과의 매매 관련 분쟁시 주문체결내역 명세 및 전산주문표에 고객의 확인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에 참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Q4 매매명세의 통지방법상 전자통신에 HTS등에 의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는지요?

- ☞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투자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Q5

자본시장법 제16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제6-22조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임대리인 이외에 별도로 주문 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외국법인은 상임대리인 이외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상임대리인은 증권의 보관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것은 상임대리인의 본질적 역할이 아니며,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의 문언상으로도 상임대리인의 매매주문 수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6

1. 투자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매매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그 체결내역만을 받아 국내에 개설된 투자자 계좌에 반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위 업무형태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호제1항제2호라목의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탁가능업무인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와 위탁금지업무인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를 모두 고려하면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수탁자가 적정한 증거금이 위탁자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및 관리하고 주문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 ☞ 1. 투자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2. 투자자가 직접 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 등을 매매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는 그 체결내역만을 받아 국내 투자자 계좌에 반영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7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는 언제까지 공시해야 하나요?

-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 및 동 시행령 제208조의 3에서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제도와 달리 공시제도는 잔고평가 금액에는 상관없이 공매도잔고비율(공매도 잔고를 상장주식으로 나눈 비율)이 0.5% 이상이면 발행하는 의무입니다. 공시는 해당기준에 도달한 날(공시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장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 거래가 없더라도 해당 기준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